



법관임용절차 관련 설문조사 결과

(2015년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법관 대상)

※ 아래 내용은 설문조사 결과 중 다수의견을 중심으로 취합, 편집한 것입니다.

1. 법관임용 지원 관련

(1) 실무능력평가(법률서면 작성 및 실무능력평가 면접)를 위하여 사전에 따로 준비한 것이 있다면(예컨대 학습 등),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셨습니다?

- 법률서면 작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따로 공부한다고 하여 반드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정보를 듣고 별도로 학습하지는 않고, 직장에서 판결문, 준비서면 등을 검토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실무능력평가 면접을 위해서는 민·형사 기본서와 사법연수원 교재, 판례공보를 1독하였습니다.
- 최신 민·형사 판례 등을 중심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준비는 임용공고가 난 무렵부터 시작하였고, 회사업무가 끝난 후나 주말을 이용하여 틈틈이 준비하였습니다.
- 서류심사를 통과한 이후 사법연수원 책자나 기록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 실무능력평가 면접 직전에 사법연수원의 판례집과 수업자료를 읽어보았습니다.
- 법률서면 작성의 경우, 서류심사 통과소식을 들은 후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사법연수원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다만, 법률서면 작성시에는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법고을 프로그램을 활용한 판례검색이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능력평가 면접의 경우에는, 법률서면 작성 평가 통과소식을 들은



후 교과서의 중요부분 등을 읽어 보았습니다.

- 법률서면 작성은 1주일 전부터, 실무능력평가 면접은 3일 전부터, 사법연수원 주요 교재(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 형사재판실무 등)를 읽어보고 최신 대법원 판례 등을 찾아보는 정도로 준비하였습니다.
-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매 평가 직전 주중, 주말에 사법연수원 기록 답안을 읽어보는 정도로 준비하였습니다.
- 임용계획 공고 후 주말 등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주로 사법연수원 교재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대략 1달 전부터 사법연수원의 민·형사 교재, 기록과 유인물, 최신 판례공보를 공부하였습니다.
- 현재 담당하고 있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따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시험 전 날 사법연수원 교재를 일독한 것으로 준비에 같음하였습니다.
- 사전에 별도로 준비한 것은 없었고, 면접 전에 요건사실론, 사법연수원 기록의 답안지(해설)를 1독하였습니다.

2. 법률서면 작성 평가

(1)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이 법률서면 작성 평가에 응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 법률서면 작성의 경우 법조인으로서 수행했던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사실 인정이 주로 문제되는 시험이라고 생각되어, 별도로 공부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실제 송무를 담당하여 직접 수행하여 본 경험과 실력에 크게 좌우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 충분히 발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법조인으로서의 경험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문제유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민사의 경우에는 업무경험이 없어서 느낀 바가 없으나, 형사의 경우에는 그간의 경험과 실력이 매우 도움이 되었고 특히 기록을 읽는 속도나 쟁점을 파악하는 것 등에 있어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저는 주로 소송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법률서면 작성 평가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업무 수행 외에 평가를 위해 따로 준비한 내역이 법률서면 작성 평가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 짧은 시간 내에 증거들의 증명력을 평가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록을 많이 접해보고 꼼꼼하게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기록을 접해보는 것 외에 달리 준비하여도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업무수행에서 다루게 되는 법분야가 한정됨에 반하여 법률서면 작성 평가에서는 평소 다루어 보지 않았던 부분(예를 들어 형사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 검토보고서 형식을 어느 정도 익히고 법률서면 작성 평가에 임했으나, 평가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았고, 평가의 중점 또한 사실인정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서면작성 평가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고 평소의 업무능력에 좌우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법률서면 작성 평가 문제의 수준이 법조인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임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 직업 특성상 평소 민사사건을 거의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수원 사례연구 교재를 다시 보면서 민사실무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쟁점이 무엇인지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고, 대법원 판례는 사실관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풀어나가는 구조를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다.

- 사법연수원의 정형화된 교재를 일부 살펴보는 것으로는 당사자가 치열하게 다투고 때때로 법률적 주장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법관임용절차 준비를 위해 기본서와 판례집을 정독하였으나 법률서면 작성 평가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는 단순히 특정 법리나 판례의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기에 법적지식의 정도와 무관하게 평소 지원자의 업무수행 능력 및 논증 능력, 사실관계 파악 능력 등이 자연스럽게 평가될 수 있는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3) 현행 법률서면 작성 평가에서 송무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법률서면 작성 평가는 일반적인 사실판단 및 논증능력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특정 업무영역과 상관없이 모든 법조인이 기본자질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송무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을지라도 법조인으로서의 기본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면 평가 과정에서 그 실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법연수원 2년 동안 충분히 연습을 하기도 하였고, 자문변호사는 법률의견서 형태의 서면을 통해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확정된 후 그 사실관계 하에서의 결론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송무에서의 서면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전문 분야를 주로 다룬 지원자라도, 법률서면 작성 시험이 법리나 판례 지식을 주로 묻는 시험이 아니어서 불리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법관의 업무가 일반적인 사실판단 및 논증능력을 가장 기본으로 하므로 이러한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현행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무경험이 많다고 하여 반드시 법률서면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고 보장할 수



없고, 반대로 송무경험이 없거나 특정한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한 지원자도 기존의 사법연수원에서의 연수경험, 평가를 대비한 공부 등을 하여 평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송무경험이 전혀 없거나 특정 전문분야만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한 지원자로서는 사건기록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록을 읽어내는 것 자체가 다소 생소하고 당황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위해 주어진 사건기록 자체가 송무경험의 유무와 그 정도에 비례하여 사실관계의 판단이나 논증능력의 발휘가 달라질 정도로 복잡하거나 특이한 사례가 아니었고, 가장 기본적이고 평범한 유형의 사건기록이었기에 비록 송무경험이 없거나 특정 전문분야만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무난히 치를 수 있을 정도의 평가였다고 생각합니다.

3. 실무능력평가 면접

(1) 실제 경험해 본 실무능력평가 면접이 귀하가 당초 예상한 것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예상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입니까?

- 크게 다른 점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 없었습니다. 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질문의 범위가 훨씬 넓고 심층적인 점이 다르다면 다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의 해당사례에 대한 답변만 아니라, 관련 법률지식(이론, 최신판례)을 모두 정확히 이해하고 간결하게 정리, 말할 수 있어야 만족할만한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기본개념들에 대한 이론적인 질문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 구술방식으로 법률적 쟁점을 심도 깊게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예상했던 바를 크게 벗어나는 점은 없었습니다.

(2) 귀하가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실력이 위 실무능력평가 면



접에 응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 법리에 대한 검토와 그에 따른 결론뿐만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논거까지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단기간 공부를 한다고 해서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평소 법리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할 기회가 많았던 지원자에게 유리한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쌓아온 경험과 실력이 잘 발휘될 수 있었습니다.
- 충분히 발휘되었다고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질문 자체가 법대, 사법시험 준비과정, 사법연수원에서의 공부 및 변호사로서 겪어온 경험과 쌓아온 실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밖에 없도록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 평소 업무가 형사 분야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민사 분야 면접에 응하는 과정에는 업무경험 외의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형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심분 발휘될 수 있었고, 딱히 판례의 결론을 모르는 쟁점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례와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3) 업무 수행 외에 따로 평가를 위해 준비한 내역이 실무능력평가 면접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 형사시험에서 최신 판례를 따로 공부하였던 것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외의 질문들은 따로 공부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 평소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한 경험이 있다면 대답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률서면 작성과는 달리 실무능력평가 면접은 대부분의 질문이 판례나 법리에 관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비록 면접 전에 사례 관련 판례 검색이나 지참 교재 참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면접 시 사례를 응용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판례나 법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의 내용이 민사와 형사의 일반 법리에 관한



것이어서, 평소 다루어 보지 않은 내용의 경우 비록 사전에 사례를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답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 관련 법리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아주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틈틈이 최신 판례를 본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평소 업무 내용이 일반 민·형사 분야는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로 민·형사 교과서를 공부한 것은 평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4. 실무능력평가 일반(서면작성 및 면접)

(1) 지원자 입장에서 위 두 가지 전형(법률서면 작성, 실무능력평가 면접) 중 더 까다롭게 느껴지거나,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과정은 어떤 것입니까?

- 실무능력평가 면접이 더 까다로웠습니다. 우선 면접의 특성상 질의 즉시 대답을 하여야 하고, 또 민사와 형사 전반적으로 법리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법률서면 작성에 비해 실무능력평가 면접의 경우 판례지식이 더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 실무능력평가 면접이었습니다. 둘 다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만 법률서면 작성의 경우 특정 법리를 묻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덕목인 사실인정과 이를 논리적으로 풀어 쓰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웠습니다. 이에 반하여 실무능력평가 면접의 경우 이미 판례가 있는 사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어서 특정 법리를 모르거나 헛갈릴 경우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 법률서면 작성 평가의 경우 별도의 준비를 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준비를 하



더라도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유형의 평가라 준비하는데 부담은 없으나 더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이와 달리 주로 판례나 법리를 물어보는 실무능력평가 면접의 경우 관련 판례나 법리를 전혀 모르는 경우 면접에서 답변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5. 기타

(1) 기존 회사(기관) 소속 동료나 후배가 법관임용 지원을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서 묻는다면,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대비하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 단기간 판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등의 방법은 도움이 되지 않고, 먼저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항상 고민하는 자세로 법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조언하고, 다음으로 틈틈이 기본서를 탐독하여 업무수행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한 기본 법리를 충실히 하라고 조언하겠습니다.
- 평소 담당하고 있는 법률사무에 충실하라고 조언하겠습니다.
- 여건이 허락한다면 서류준비를 하는 때부터 미리 조금씩 민사와 형사의 기본적인 법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기억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복습해 두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 함께 수행해야할 업무나 집중력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지원 당해 상반기에는 최신판례 위주로 보고, 지원 후에는 연수원 기록을 집중해서 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 평소에 준비서면을 성실히 쓰는 습관을 가지라고 할 것이고, 법률서면 작성은 따로 연습을 할 것이 아니라 기록을 볼 때 결론과 그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는 연습을 하면서 서면을 쓰고 기록을 보는 습관을 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무능력평가 면접에 관하여는 법률서면 작성 평가 통과 이후부터 판례집이나 교과서 등의 주요부분을 틈틈이 눈에 익히라고 하겠습니다.



- 저는 1달 이내의 준비기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사법연수원 교재와 최신 판례공보를 공부하기를 권하겠습니다.
- 검사 지원자의 경우에 한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검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하되 틈틈이 시간을 내어 사법연수원 교재 및 민사기록 문제를 풀어보라고 안내할 것 같습니다.
- 지원을 결심하면 사법연수원 기록물 및 민사, 형사 판례를 공부하고, 평소 업무 시 사실관계가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안의 판결문을 찾아 사실인정 및 결론도출 과정을 익히는 방식으로 대비하도록 조언하고 싶습니다.
- 평소 업무(사실관계 파악, 서면 작성 등)에 충실히 하면 법률서면 작성 평가는 충분히 치러낼 수 있을 것이고, 실무능력평가 면접에 대비해서는 기본서와 최신 판례집을 읽어 보라고 조언할 것입니다.